

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

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혁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『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9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개요

-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혁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, 로봇, 제조데이터 활용, 컨설팅 등을 지원

<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분	세부사업명	지원 규모	지원 기간	지원 한도	지원금 비중	사업 공고	신청 접수	평가 선정
① 스마트공장 구축 (일반형)	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	620	9개월	2	50%	'23.1	'23.1~3	'23.3~6
	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(기초, 고도화)	216	6개월 (기초) 9개월 (고도화)	0.3 (기초) 1.2 (고도화)	30%	'23.1~	'23.1~	'23.3~
② 스마트공장 구축 (특화형)	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	70	9개월	2	50%	'23.2	'23.4~5	'23.6~7
	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	30	9개월	2	50%	'23.1	'23.1~2	'23.2~5
	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	36	9개월	2	50%	'23.1	'23.1~4	'23.4~5
	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	181	8개월	3	50%	'23.1	'23.1~2	'23.2~5
③ 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	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	100	9개월	2	50%	'23.2	'23.3~4	'23.5~6
④ 제조데이터 활용지원	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	70	6개월 내외	0.7	80~90%	'23.1	'23.1~2	'23.3~4
	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	10	8개월	0.1	100%	'23.2	'23.3~	'23.3~
⑤ 공급기업 얼라이언스	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	8.3	9개월	8.3	50%	'23.1	'23.1~	'23.2~4
⑥ 수준확인·컨설팅 등 기타	스마트공장 수준확인	12.5	-	0.01	100%	'23.1	'23.2~	'23.3~
	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	37.8	6개월	0.15	90%	'23.1	'23.2~	'23.3~
	스마트공장 AS지원	70	6개월	0.2	50%	'23.1	'23.2~	'23.2~

- * 지원규모는 해당 사업의 당해년도 사업예산을 말하며, 개발기간·지원한도·정부지원금 비중은 '최대'를 의미함
- * K-스마트등대공장, 디지털클러스터(선도형) 및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계속사업만 추진
- * 일부내용 변경 가능하며,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고문('23.1월 이후) 확인 필요

1 신청자격

- 국내 중소기업

2 신청방법

- 온라인 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☞ 사업계획서 신청 : smart-factory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 내용입력

※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
3 세부사업별 공고

-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,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(www.mss.go.kr),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(smart-factory.kr)에 공고

4 정부지원금

-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30~100% 이내

※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(현금부담)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

5 지원제외 사항
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부적격 사항 -
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-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개별 사업공고에서 '신청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
6 관련 법령 및 규정

○ 법(법령)

-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3(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)
-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(사업)

※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, 지원기준, 평가절차 및 방법,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

※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(전문기관 및 관리기관)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

2. 사업별 지원계획

※ 지원내용,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사업별 세부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-1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

사업개요

-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제조현장의 경쟁력 향상

지원규모 : 620억원

지원대상 :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지원내용

-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과 스마트 공장 수준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
 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입 지원

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1(동일수준*)	최대 6개월, 0.5억원	50% 이내
고도화1	최대 9개월, 2억원	50% 이내

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. 단,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

*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
*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,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

①-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(유형1, 유형2)

사업개요

-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여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

1 주관기관/협업기관 모집

지원대상 :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·중견기업·공공기관·민간기관(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)

*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(주관기관 출연금의 20% 이내)

- 협업기관은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·민간기관

지원내용

- 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,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

- 주관기관이 타 기관(협업기관)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,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·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
*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

2 참여기업 모집(* 주관기관 모집 후 별도 공지)

지원규모 : 216억원

지원대상 :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지원내용

-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지원과 스마트공장 수준향상을 위한 고도화 지원

*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입 지원

□ 지원조건

- (유형 1) 주관기관과 중소·중견기업이 총 사업비의 70%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%(최대 1.2억원) 지원
- (유형 2) 기초수준(최대 2,000만원)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% 지원(소기업 대상 지원)

구 분	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유형1	기초(동일수준*)	최대 6개월, 0.3억원	30% 이내
	고도화1	최대 9개월, 1.2억원	30% 이내
유형2 (소기업 대상)	기초	최대 6개월, 1천만원	50% 이내

- 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. 단,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
- *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- *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,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

②-1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

□ 사업개요

-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사업의 전략성 강화
-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, 해당부처는 R&D·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지원

□ 지원분야

-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
 - * 구체적인 분야는 상세 사업공고('23.2)를 통해 안내할 계획

□ 지원대상 : 해당 지원분야의 중소·중견기업

□ 지원절차

- (1단계) 사업 운영기관* 추천(협업부처) 및 선정(중기부) → (2단계) 운영기관이 지원기업 선정 → (3단계) 스마트공장(중기부) 및 기업지원서비스(협업부처)를 패키지 지원
 - *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
 - *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·민간기관이며, 협업부처의 협의를 거쳐 R&D·인증·판로·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

□ 지원규모 : 70억원

□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1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5억원	50% 이내
고도화1	최대 9개월, 2억원	50% 이내

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. 단,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

*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
*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,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

②-2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

사업개요

-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제체계의로의 전환을 지원

지원규모 : 30억원

지원대상 : 국내 중소·중견 기업*

* 뿌리기술(14개 업종), 고탄소 배출업종

지원내용

- 에너지 진단·설계 컨설팅,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, 고효율 설비 개체 등을 패키지 지원

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1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5억원	50% 이내
고도화1	최대 9개월, 2억원	50% 이내

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. 단,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

*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
*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,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

②-3 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

□ 사업개요

-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인공지능, 제조데이터 분석 등 공급기술 역량이 검증된 유망 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 및 사업화 지원

□ 지원규모 : 36억원, 2개내외 운영사* 선정(공급기업 3개사씩 추천권 부여)

- * 운영사 선정 후 그 운영기관이 공급기업을 추천
- * 2년 주기로 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, 매년 운영성과 점검을 통해 공급기업 추천 T/O 재배분

□ 지원대상 :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및 투자유치(예정) 공급기업

- 운영사 투자를 유치(투자확약 포함)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, 제조데이터 분석 및 비전 인식 등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중점 지원
- 공급기업은 VC 등으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, 5억원 이상 투자유치 필요(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투자 예정도 가능. 단, 기간 내 투자유치 실패 시 협약 해약)

□ 지원내용

- 운영사가 추천한 공급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3개 과제(국비 최대 6억원)를 지원

□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고도화1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5억원	50% 이내
고도화1	최대 9개월, 2억원	50% 이내

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. 단,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

*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
*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,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

②-4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

사업개요

-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

지원규모 : 181억원

지원대상

-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관련 기업
-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
 - (도입기업)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관련 기업
 - (공급기업) 제조 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(로봇 SI기업)

지원내용

- 제조공정 로봇 도입, 공정설계 컨설팅,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

지원조건 : 최대 8개월, 3억원 이내 (지원 비율 50% 이내)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로봇 도입	최대 8개월, 3억원	50% 이내

③ 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

□ 사업개요

- 성장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선도기업 등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기업간 데이터·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공급망(SCM) 연계형 스마트 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
- 대표기업(지역선도기업, 지역스타기업 등)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참여기업 간 협업구조로 구성
 - * (예시1) 소재·부품 → 모듈 →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
 - * (예시2) 연구개발 → 설계 → 구매(조달) → 제조 → 유통(물류) → 판매 → 서비스(A/S)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

□ 지원규모 : 100억원

□ 지원대상 : 대표기업, 참여기업,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
□ 지원내용

- **(대표참여기업)** 협업체 중심의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
 -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'개별기업 →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*' 방식으로 전환, 구축비 잔액을 활용하여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지원
 - * (예시) 기업당 2억원 한도(고도화 기준),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(1.4억원), 공동협업시스템 (0.6억원) → 5개 기업 턴키 지원시, (개별보급) 7억원(1.4억원 x 5개) + (공동협업) 3억원(0.6억원 x 5개)
- **(기획기관)** 전략수립 및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등 클러스터 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 - * 선정된 클러스터의 총 사업비 5% 이내에서 운영비 책정 가능

□ 지원조건

구 분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	정부지원금 비중
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+ 공동·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	고도화1 (동일수준)	최대 6개월, 0.5억원	50% 이내
	고도화1	최대 9개월, 2억원	50% 이내

- * '동일수준'은 수준향상 없이(중간1→중간1, 중간2→중간2) 재신청하는 경우. 단,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(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)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
- *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(6개월) 포함하여 체결
- * 위 금액은 정부출연금으로, 중진공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추가적으로 융자지원 가능

④-1 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

사업개요

- 제조 현장에서 다수 사용되는 AI 표준모델, 알고리즘 등을 활용, 기업별 AI 솔루션 기술검증 및 현장적용 지원

지원규모 : 70억원

지원대상 :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정개선 의지가 강하고 컨설팅 및 실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지원내용

- AI전문가, 공정전문가 등을 기업에 파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AI활용 방법 탐색, 최적 솔루션 및 공급기업 추천 등 컨설팅
- 공급기업이 도출된 해결방법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실증

지원조건

구 분	지원 기업수	지원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금 비중
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	100개사 내외	6개월, 7천만원	80~90% 이내

* 지원비율 : 컨설팅(90%), 실증(80%)

④-2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

사업개요

-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재직자 대상으로 인공지능·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제조데이터 촉진자*로 육성, 현장의 스마트화 촉진

* 도입기업의 현장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해 공급기업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직원

지원규모 : 100명(교육비 무료)

지원대상 :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, 스마트공장 고도화* 사업에 선정된 중소·중견기업의 재직자

*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, 고도화2 스마트공장, K-스마트등대공장 등

교육기관 : 한국과학기술원(KAIST)

교육 과정

- 생산공정 최적화, 품질 예측, 설비고장 사전진단(예지보전) 등 제조 현장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·데이터 활용 교육

- (교육) 인공지능 기초, 문제 유형별 분석 방법론, 문제해결 사례 학습 및 실습 등 비대면 교육과정 운영

- (현장실습) 이론 교육 내용을 자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적용(인공지능 마이스터와 1:1 코칭)

* 교육기관 및 교육대상 관련하여 일부 내용 변경 가능(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)

⑤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

사업개요

-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표준화된 데이터 체계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패키지 형태로 개발 지원

지원규모 : 1개 컨소시엄

지원대상 :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공급기업(중소기업) 컨소시엄(공급기업 3개사 이상, 클라우드 공급자 1개사 이상 필수)

* Public cloud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공급자 필수 참여

** 컨소시엄내 솔루션 시범 적용을 위한 제조기업(도입기업) 참여 가능

지원내용

- 업종별 대표 공정 또는 주요 생산품 제조현장의 스마트화·디지털화에 적용 가능한 MES(제조관리시스템), ERP(전사적 자원관리), PLM(제품수명주기 관리), AI(인공지능 솔루션) 등의 주요 기능·솔루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공급 가능한 솔루션 개발 지원

* Public cloud 환경에서 SaaS(서비스형 소프트웨어)형태로 솔루션 공급이 가능해야 함

지원조건 : 최대 50%지원(8.3억원)

* 단, 공급기업 지원사업 취지 및 책임감 확보를 위해 자부담 중 **공급기업 컨소시엄이 70%이상 부담** 필수(클라우드사업자 또는 컨소시엄내 도입기업 자부담 가능)

** 공급기업의 기존 보유 소스코드, 개발도구 활용,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%까지 현물 인정

유의사항

- 업종의 대표 공정, 주요생산품 제조공정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도출하기 위하여,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화·디지털화·AI적용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요

⑥-1 스마트공장 수준확인

사업개요

-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

① 확인기관 및 교육·심의기관 모집(‘23.1월 별도 공모)

모집개요 : 수준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확인기관 및 교육·심의기관 선정

모집기관

- (확인기관) 수준확인 사업 전반(수요 발굴 및 홍보, 수준확인 신청 접수, 수준확인 실시, 사후관리 등)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
- (교육·심의기관)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,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

지원내용

- (확인기관) 참여기업 모집·선정·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·운영비 지원
- (교육·심의기관)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·운영비 지원

② 참여기업 모집(확인기관, 교육·심의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)

지원규모 : 12.5억원

지원대상 :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- 기업 자체 역량(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)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
-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

지원내용

-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지원,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

지원조건 :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

⑥-2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

사업개요

-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조현장 개선, 기술 애로 해결 등 경험과 노하우를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·중견기업에 전수

① 운영기관 모집(‘23.1월 별도 공모)

모집기관

- 마이스터 사업 전반(수요 발굴 및 홍보, 마이스터 관리·교육, 사업 신청·접수, 컨설팅 지원 등)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(컨소시엄 가능)

지원내용

- 참여기업 모집, 우수 마이스터 확보 및 관리,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·운영비 지원

② 참여기업 모집(운영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)

지원규모 : 37.8억원

지원대상 :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·중견 제조기업

지원내용

-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및 고도화 로드맵 수립, 구축 후 활용도 제고, 구축과정 애로 해결 등 스마트공장 구축지도
- 제조현장 개선, 기술애로 해결 등 대기업 제조 노하우 전수

지원조건

- 기업당 마이스터 최대 6개월 파견(총 인건비의 10% 기업부담)

구분	지원방법	지원기간	사업비(분담비율)	
			정부지원	민간부담
기본	마이스터 1인 x 8회	1개월	252만원(90%)	28만원(10%)
심화	마이스터팀 x 24회	3개월	756만원(90%)	84만원(10%)
종합	마이스터팀 x 48회	6개월	1,512만원(90%)	168만원(10%)

⑥-3 스마트공장 AS지원

사업개요

-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,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

지원규모 : 70억원

지원대상 :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(수준확인 기업 포함)

지원내용

-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/W(부품 등) 및 S/W(솔루션 등)의 고장·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
-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하는 생산품목 변경, 공정개선, 생산효율성 개선,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/W 및 S/W 업그레이드 지원
- 역량강화 교육,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, 활용 관리, 지속적 H/W, S/W 개선 등의 AS를 주기적·장기간(6개월 이내) 지원

지원조건

지원유형	지원내용	정부지원금	지원기간	지원비율
AS지원	고장·결함 수리, 업그레이드 지원, 사용법 전수,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전 분야	최대 20백만원	최대 6개월	50% 이내

3. 사업별 문의처

□ 사업별 문의처

구분	세부사업명	중소벤처기업부	전문(관리)기관	연락처
① 스마트공장 구축 (일반형)	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	제조혁신과	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	044-300-0951 044-300-0957 044-300-0959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(기초, 고도화)			044-300-0958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② 스마트공장 구축 (특화형)	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	제조혁신과	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	044-300-09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		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	055-751-9588
	투자연계형 스마트공장		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	044-300-0959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		한국로봇산업 진흥원	053-210-9552~6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③ 협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	공급망 연계형 스마트공장	제조혁신과	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	044-300-0951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④ 제조데이터 활용지원	인공지능 컨설팅 및 실증	디지털혁신과	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	044-300-0944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			044-300-0942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⑤ 공급기업 얼라이언스	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	제조혁신과	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	044-300-0972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⑥ 수준확인·컨설팅 등 기타	스마트공장 수준확인	제조혁신과	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	044-300-0956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
	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		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	044-300-0953
	스마트공장 AS지원		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	055-751-9587

※ 전문(관리)기관 및 운영기관 등 추진체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향후 사업별 세부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

·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: <https://smart-factory.kr>

·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
·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: “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” / http://pf.kakao.com/_Ilfqd